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구단12689 지방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9. 6. 12.

판 결 선 고 2019.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9. 원고에게 한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8. 4. 5. 거제시 B 토지 1,824㎡ 및 건축물 127.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8. 4. 16. 피고에게 그 취득가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26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9,205,000원, 지방교육세 789,000원, 농어촌특별세 526,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라 2016. 10. 25.자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 등에 관하여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게 "원고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을 추가하거나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경청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redacted]남도에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13.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25. 사업등록 절차에 대한 지식의 미흡과 세무서 공무원의 불충분한 행정지도로 인하여 폐업 및 신규등록 절차를 하지는 않았으나, 변경등록 후 식육판매업과 관련된 모든 장비들을 철거한 다음 제조설비를 설치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는 변경등록 이전의 면세사업이었던 식육판매업을 폐업하고 새롭게 축산물가공업을 창업한 것으로 볼 것임에도, 원고가 창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1) 원고의 사업자등록, 상호 및 그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등록(변경)사항	등록일자	상호	업태 및 업종
면세사업자로 최초 등록	2014.3.14.	C	도소매/식육판매업
1) 면세사업자 폐업 2) 과세·면세 겸용 사업자 등록	2016.10.25.	C	주종목: 도소매/식육판매업 부업종: 제조/축산물(식육) 가공업
주업종 변경	2017.7.21.	C	주업종: 제조/축산물(식육) 가공업 부업종: 도소매/식육판매업
상호변경	2017.7.27.	D	주업종: 제조/축산물(식육) 가공업 부업종: 도소매/식육판매업
부업종 등록취소 (사업종목 변경)	2017.10.10.	D	제조/축산물(식육)가공업
상호변경	2017.11.6.	E	상동

(2)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 세 기 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부터	까지	계	과세분	면세분
2016/10/25	2016/12/31	19,492,894	904,910	18,587,984
2017/01/01	2017/06/30	56,636,854	56,636,854	0
2017/07/01	2017/12/31	218,100,371	218,100,371	0
2018/01/01	2018/06/30	188,725,556	188,725,556	0

(3) 원고는 최초 사업자등록시 육류판매, 식육식당 운영, 곰탕 조리 등을 하였고, 그 당시 식육식당이 있던 자리 및 그 인근 토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포장된 곰탕 제품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제조, 냉각, 저장 설비 등 공업설비를 신규로 도입하였으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기존의 창고, 냉장고, 에어컨 등은 계속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 및 동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하고, 그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58조의3 제4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 제4호가 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참조).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의 제조업 개시는 기존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내역에 비추어 보면, 식육판매업의 면세사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이후 2016. 10. 25. 면세사업에 관하여 폐업등록을 하였으나, ① 이후 대부분의 매출은 면세사업에서 발생하였던 점, ② 위 면세폐업과 동시에 과세 및 면세 사업자로 변경등록하였고, 주업종은 오히려 면세사업으로 신고한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인 폐업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호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평판과 신용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10. 25.자 사업자등록은 기존 사업을 영속하면서 과세사업을 추가적으로 영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최초 사업자등록시 곰탕에 대한 대량생산 및 포장을 통해 제조업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육류를 삶는 시설을 갖추고 소규모로 곰탕을 제공하기도 하였던바, 기존의 판매물품에 관하여 대량생산 및 장기간 유통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새로운 업종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창업이란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고용 부문에 있어 신규인력 채용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도 종전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업종 및 상호변경이 1년간에 걸쳐 순차적 ·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규 창업으로 볼 만한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원